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80

발의연월일: 2022. 9. 28.

발 의 자: 박광온 · 전혜숙 · 송갑석

김주영 • 이원욱 • 이장섭

민병덕 · 김철민 · 김영배

윤영찬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법원은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,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,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.

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.

이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, 잠정조치기 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,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, 범죄를 예방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"제1항제2호 및 제3호에"를 "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"로, "2개월"을 "6개월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"제1항제2호 및 제3호에"를 "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"를

5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	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
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	조치) ①
원활한 조사・심리 또는 피해	
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	
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	
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	
(이하 "잠정조치"라 한다)를 할	
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	⑤ <u>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</u>
른 잠정조치기간은 2개월, 같은	<u>호에</u> 6 <u>개월</u>
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	
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	
만,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	
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	
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	
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	<u>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</u>
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	<u>5호에</u>
레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	
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	

략)

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 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· ② (생 제18조(스토킹범죄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

<삭 제>